

면제확인서

신청인	회사명	
	대표자	전자우편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
제조사	제조국명	
	회사명	
면제 확인 대상제품	소방장비명	형식
면제내용	[]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[] 인증기관이 상호 인정계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	

「소방장비관리법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

직인